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74
----------	------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실장 정상훈)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 <li>- 전용면적 : 3,665<math>m^2</math></li> <li>- 주요시설 : 감사실, 연구평가본부, 사업1본부(복지협력실), 사업2본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영기획실 등</li> </ul>	
후석동 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 <li>- 전용면적 : 814.64<math>m^2</math></li> <li>- 주요시설 : 사업1본부(복지사업실, 서울복지교육센터), 사업2본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 </ul>	

###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다. '25년 총 소요예산(안) : 금80,709,888천원

라. '25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57,196,320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3,513,56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한 복지재단의 재원지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2025년 회계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sup>2)</sup>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도 그 적용 대상이므로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sup>3)</sup>을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사항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

- 이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4에 따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결산 보고서 등이 누락 되지 않고 모두 제출되었음.

##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개요 및 현황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재단법인(비영리공익법인)임.

#### 가. 조직 및 인력

- '24년 현재 복지재단은 2실, 3본부로 운영되고 있음.
  - 2실에는 감사실과 경영기획실로 감사실은 대외감사 수감,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경영기획실은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인사관리, 재무,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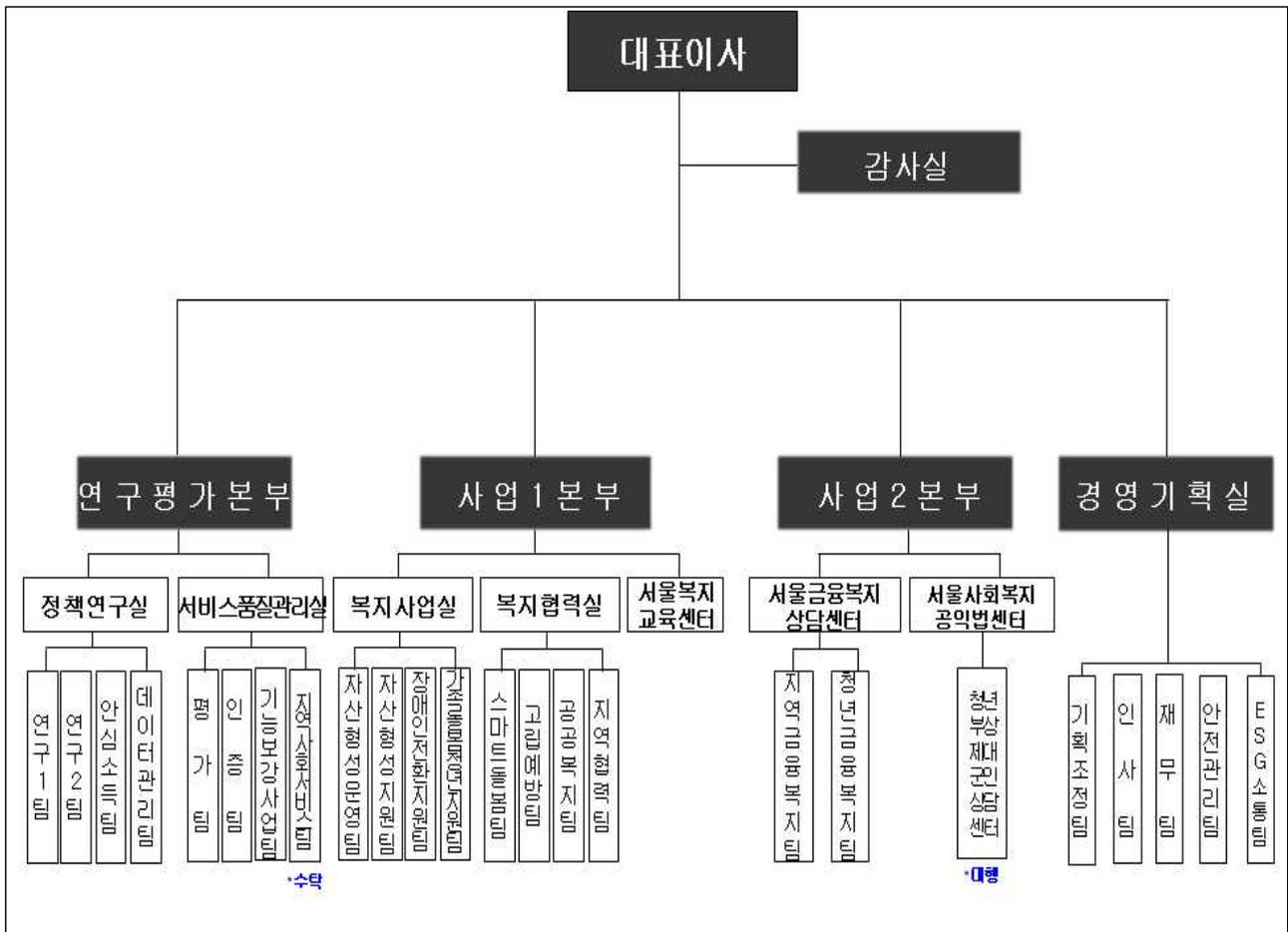
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3본부는 연구평가본부, 사업 1본부, 사업 2본부로 구성되며, 연구평가본부는 정책연구실과 서비스 품질관리실로 재단의 연구과제 수행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기능보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 1본부는 복지사업실, 복지협력실, 서울복지교육센터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스마트돌봄 및 고립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 2본부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있음.

〈표1〉 서울시 복지재단 조직도

(’24. 7월. 기준)



- 현재 복지재단의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87명으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표

(’24. 7.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일반직·특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미화직	임피제 별도직급
정원	187	1	186	2	10	22	28	122	2	-
현원	187	1	186	1	10	22	30	118	2	3

## 2. 출연금 추이 및 예산 현황

### ① ‘24년 세입 현황

- 복지재단의 ‘24년도 총 세입예산은 828억 7천만원으로 ’23년 824억 4천만원 대비 4억 2천만원(0.5% 증)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출연금은 721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임.

### 〈표3〉 최근 5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20	45,585	37,240	82%	15%
2021	52,759	42,435	80%	14%
2022	62,743	51,958	83%	22%
2023	82,446	76,023	92%	46%
<b>2024</b>	<b>82,870</b>	<b>72,143</b>	<b>87%</b>	<b>-5%</b>
총 액	326,403	279,799		
평 균	65,281	55,960	85%	19%

- 복지재단의 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재단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출연금의 증가(20년 372억원 대비 '24년 721억원, 349억원 증)때문이며, 조사·연구·평가 등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 외에 그 간 서울시 역점사업 및 수탁사업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등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임.
- 집행기관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표4〉 2024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B)	2024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C/B)
합 계	82,445,759	82,870,204	424,445	0.5%
출연금수입	76,022,567	72,143,520	-3,879,047	-5%
재단자체수입	6,423,192	10,726,684	4,303,492	67%
사업수입 (대행사업)	1,086,600	1,556,268	469,668	43%
사업외수입	389,856	850,742	460,886	118%
잉여금수입	3,072,551	6,466,336	3,393,785	110%
기부금수입	50,000	50,000	0	0%
잡수입	1,824,185	1,803,338	-20,847	-1%

#### ② '24년도 세출 현황

- 복지재단의 총예산은 828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천만원이 증가(0.5% 증)하였음.
- (주요감액사유) '24년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로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운영 사업의 안심소득 급여지급 업무가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출연금 11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표5〉 2024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B)	2024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D) (C/B)
<b>합 계</b>	<b>82,445,758</b>	<b>82,870,204</b>	424,446	0.5%
<b>선도적 복지정책개발</b>	3,563,900	3,531,226	-32,674	-0.9%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1,430,000	1,683,013	253,013	17.7%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연구	2,133,900	1,848,213	-285,687	-13.4%
<b>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b>	<b>1,506,403</b>	<b>2,055,086</b>	<b>548,683</b>	<b>36.4%</b>
<b>서비스품질향상 위한 제도적 지원</b>	<b>306,302</b>	<b>700,864</b>	<b>394,562</b>	<b>128.8%</b>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358,000	332,588	-25,412	-7.1%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333,100	462,633	129,533	38.9%
사회복지 인재양성	509,001	559,001	50,000	9.8%
<b>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립지원 강화</b>	2,917,000	2,145,252	-771,748	-26.5%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160,000	182,361	22,361	14.0%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2,757,000	1,362,891	-1,394,109	-50.6%
<b>가족돌봄청년 지원</b>	<b>=</b>	<b>600,000</b>	<b>600,000</b>	<b>=</b>
<b>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및 지역복지 활성화 추진</b>	1,896,154	1,717,216	-178,938	-9.4%
사회적고립가구 발굴·관리	1,203,333	1,083,741	-119,592	-9.9%
사회적고립가구 체계적 지원	292,505	290,301	-2,204	-0.8%
공공복지전달체계 지원	281,548	225,650	-55,898	-19.9%
지역복지 민관협력 지원	118,768	117,524	-1,244	-1.0%
<b>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b>	1,224,925	932,833	-292,092	-23.8%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134,359	126,988	-7,371	-5.5%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1,090,566	805,845	-284,721	-26.1%
<b>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일반관리비 등으로 예산이동</b>	1,884,514	-	-1,884,514	-100%
조직경영의 전략적 실행력 강화	174,000	-	-174,000	-100%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30,800	-	-30,800	-100%

구분	2023년 예산(B)	2024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D) (C/B)
<b>합 계</b>	<b>82,445,758</b>	<b>82,870,204</b>	424,446	0.5%
효율적이고 신뢰하는 조직인프라 구축	1,038,406	-	-1,038,406	-100%
국내외 교류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632,703	-	-632,703	-100%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실현	8,605	-	-8,605	-100%
일반관리비 등	19,828,651	23,637,593	3,808,942	19.2%
<b>수탁(대행)사업</b>	<b>1,086,600</b>	<b>1,556,268</b>	<b>469,668</b>	<b>43.2%</b>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400,000	400,000	-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력사업 (공동모금회)	177,000	-	-177,000	-100.0%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509,600	470,418	-39,182	-7.7%
서울시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685,850	685,850	-
<b>서울형 자산형성 지원</b>	<b>35,294,800</b>	<b>44,329,900</b>	<b>9,035,100</b>	<b>25.6%</b>
서울꿈나래통장	1,412,950	1,301,650	-111,300	-7.9%
<b>희망두배 청년통장</b>	<b>30,810,600</b>	<b>40,629,750</b>	<b>9,819,150</b>	<b>31.9%</b>
장애인 이룸통장	3,071,250	2,398,500	-672,750	-21.9%
(기금)서민 취약계층 지원사업	810,000	810,000	-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000	760,000	-	-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0,000	50,000	-	-
(기금)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1,362,000	-	-11,362,000	-100%
<b>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b>	<b>11,362,000</b>	<b>-</b>	<b>-11,362,000</b>	<b>-100%</b>
(기금)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150,000	150,000	-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150,000	150,000	-	-
(기금)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사업	15,000	20,000	5,000	33.3%
고립가구 사회도약 지원사업	15,000	20,000	5,000	33.3%
(기금)효율적인 기금 운용	905,811	1,984,830	1,079,019	119.1%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120	3,120	-	-

구분	2023년 예산(B)	2024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D) (C/B)
합 계	82,445,758	82,870,204	424,446	0.5%
기금적립금	902,691	1,981,710	1,079,019	119.5%

- (주요증액사유) 기존사업 중 예산안이 가장 크게 증가된 사업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_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3억9천4백만원 증),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_희망두배 청년통장> (98억1천9백만원 증)이며,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립지원 강화사업\_가족돌봄청년지원> (6억원 증), <수탁대행사업\_서울시시니어일자리 지원센터> (6억8천5백만원)임.
- 기존 사업 중 가장 크게 확대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복지재단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참가자를 지속해서 확대하였고 ‘23년에는 전년도 대비 3,000명을 증원한 10,000명을 선발하였고 ’24년도 10,000명을 선발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23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확대는 필요하나, 출연금('23년 308억원)와 민간 자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억원)으로 운영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 참여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산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원 마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를 위해 민간 자원을 발굴·확보하는 방법이나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된 바도 있음.
-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은 23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던 가족돌봄청년 지원 업무를 '24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담조직팀(5명)을 설치하여,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자원 연계 등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신규사업으로 '24년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6억8천6백만원)한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은 기존 서울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여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복지재단 대행사업, 인력구성 11명)를 설치, '24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임.
-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어르신 일자리 개발과 매칭,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시니어 인턴십 운영과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 등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대비를 위한 사업인 것임.

### 3 종합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sup>4)</sup>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5)</sup>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검토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사업 추진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74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분	시설현황
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li>- 전용면적 : 3,665<math>m^2</math></li><li>- 주요시설 : 감사실, 연구평가본부, 사업1본부(복지협력실), 사업2본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영기획실 등</li></ul> 
흑석동 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li>- 전용면적 : 814.64<math>m^2</math></li><li>- 주요시설 : 사업1본부(복지사업실, 서울복지교육센터), 사업2본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ul>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25년 총 소요예산(안) : 80,709,888천원

라. '25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57,196,320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3,513,56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복지정책과 이수호 (☎ 2133-7332)